

범죄가 사랑으로 둔갑된 군대내 성추행(동성애) 사건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 중에 하나가 A대위 사건으로 나타난 군대내 동성애 문제일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군동성애 문제로 확산되면서 주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 군대는 사실 동성애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훈령 1932호 ‘동성애자 군복무 규

정’으로 2006년 이전에는 동성애자를 관리하는 형태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보호하도록 규정이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는 대대장이 특별 보호하면서 필요시 화장실, 생활관 등을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과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현재 현역장병들이 동성애 채팅앱에 가입하여 동성애 행위를 위한 만남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

제는 군복을 착용한 사진은 당연하고, 군내부를 배경으로 자신이 속한 부대를 뿔뿔이 올리고 있다. 심지어 동반입대제도를 활용하여 동성애자들끼리 입대하여 부대내의 생활관, 화장실, 목욕탕, 근무초소 등에서 동성애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A대위 사건도 이러한 행위의 연장선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사랑으로 보는 것이며 부대내의 성행위조차도 법적으로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5월 24일,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A대위가 하급자들과 동성 성관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두고 군인권센터와 친동성애 단체들은 “사랑에도 불법이 있나”며, “비록 점심시간에,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상호 합의하에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A대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동조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보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성소수자 아니 남성 동성애자만을 위한 대표’로 자신들의 위치를 전락시킨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군형법 92조의 6페이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총대를 매겠다’ 라며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태로 보인다. 더욱 문제는 김종대 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국방을 감시하는 국방위원이라는 점이다.

왜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주장들을 할까? 이는 정치사상의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바로 성정치 사상이다. ‘성정치’는 인간의 본능적인 성욕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쾌락을 통한 만족감을 찾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기존 사회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사상이다.

이를 합법적으로 변형한 것이 성적자기결정권이다. 그러면 김종대 의원이 소속되었던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내세워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군대내 동성애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본질의 문제를 살펴본다.

첫째, A장교는 신분자체가 대위로서, 그 상대가 병사를 포함하여 전부 하급자만을 상대하였다. 장교의 직책은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로서 부사관과 병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하급자만을 상대로 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대위는 근무하는 부대에 처음으로 전입 온 B하사를 상대로 근무복장을 입은 채로 성행위를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하였다. 이런 행위가 어떻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명백히 위력에 의한 강제성이 동반될 수 밖에 없는 행위이다.

둘째, A장교는 한 사람과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닌 여러 사람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다. 행위 장소는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병영내 독신숙소이고, 시간도 엄연한 일과시간이다.

이런 행위는 사랑이라고 결코 할 수 없다. 이는 분명한 규정과 법규를 위반한 일탈행위로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과연 이들이 성소수자이고 사랑의 행위인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오염시켜버린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군대내에서 하급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탈행위요, 범법행위라는 점이다.

셋째, 군형법 92조의 6 적용문제이다. 92조 6은 단순히 성추행의 문제를 넘어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을 고려하여 법으로 제정하였다. 2008년 대법원에서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판단한 이후 2002년, 2011년, 그리고 2016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헌법재

판소는 '합헌'(정당함)으로 결정했다.

이는 상명하복의 조직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가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군인의 신분인 A대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매매나 도박이 본인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되듯이 군대내에서 동성간 성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군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처음 입대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국방부와 국회에서는 또 다시 군형법 92조 6에 대하여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체계를 보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천지법의 이연진 판사가 92조 6의 '기타 성추행' 부분을 두고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에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사건처럼 상급자가 부하를 상대로 그것도 병사들을 상대로 추행한 경우, 또 같은 부대내 영내에서 일과시간 내에 성추행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여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분명하면서도, 강력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영외에서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하는 것과 구분하여 군이라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히 동성애자를 단순히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보편적 문제도 그보다 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우리의 장병들이다. 우리는 개인의 취향과 선택에 앞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지향하는 공동선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20대의 남성들에게 군형법 제92조의 6은 원치 않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예방장치와 같다.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일반 사회의 기준을 적용해 관련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군형법 92조 6의 폐지에 적극적인 군인권센터의 운영위원장 김종대 국회의원에 이어, 역시 운영위원인 이유정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어 군형법 92조 6의 위헌시비를 판결하기 때문이다.

군대는 우리 아들이 땀흘리며 웃고 우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마음껏 젊음을 불사르며 내 조국, 내 부모를 지키기 위해 가장 보람되고 가장 중요한 부대에서 멋진 전우들과 근무하였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글 | 김영길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전문위원, 미래목회포럼 정책자문위원, 한국 기독교인권본부 전문위원,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회원, 예정총회(대신) 동성애 대책위원장, 바른(軍)인권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인도어학과를 졸업했다. 국방대학원 국제관계(석사), 침례신학대학원(석사), 백석대학원 재학중(박사)이다.